

#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4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0. 9. 28.  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사유

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28공포, 법률 제6236호)됨에 따라 동법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동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조항 폐지에 따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

## 3. 참고사항

### 근거 및 법령

-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- 개정전) : 폐지
- 도 지적 업무연락('2000. 6. 26) :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참고자료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